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 용 훈

목 차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
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	1
1. 총수입 · 총지출 -----	1
2.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	2
II. 검토의견 -----	3
1. 총괄 -----	3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3
2)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	6
3) 농업 민생사업 반영 미흡에 대한 검토 -----	8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	11
1)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추경안 편성 시 각 지구별 세부적 배정계획 마련 필요 -----	11
2) 수리시설개보수 : 추경으로 배정된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17
3) 농촌용수개발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6
4) 배수개선 : 실집행이 부진한 계속지구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33
5)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구조 개선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근거 보완 등 필요 -----	40
6) 축사시설현대화(융자) :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시 사업수요의 적기 반영, 철저한 사업관리 및 기금운용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	5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I.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개요

1. 총수입 · 총지출

-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 예산안’이라 함)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총수입 규모는 13조 524억원으로 본예산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함.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A)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수입	13,052,425	13,052,425	13,052,425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202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 예산안’이라 함)을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총지출 규모는 제 1회 추경예산 18조 9,545억원 대비 1,862억원(1%) 증액된 19조 1,407억원임.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총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B-A)/A
총지출	18,741,638	18,954,535	19,140,690	186,155	1.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세부사업 주요 변동 내역

□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해 6개 세출 사업을 2025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861억원 증액하였음.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5년도				
		본예산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증감 (B-A)	(B-A) /A
총 계		1,799,815	1,799,815	1,985,970	186,155	10.3
농특회계	농촌융수개발	235,682	235,682	257,882	22,200	9.4
농특회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57,908	57,908	72,908	15,000	25.9
농특회계	수리시설개보수	761,734	761,734	843,289	81,555	10.7
지특회계	배수개선	485,164	485,164	510,164	25,000	5.2
FTA기금	축사시설현대화(융자)	95,959	95,959	118,359	22,400	23.3
농안기금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63,368	163,368	183,368	20,000	12.2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II. 검토의견

1. 총괄

1)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개요

-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업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 민생사업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였음.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①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 리스크 대응 및 AI 경쟁력 제고, ③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바 있었음('25.4.22.국회 제출/'25.5.1.의결).

기획재정부¹⁾에 따르면 이번 추경예산안(30.5조원 규모)은 최근 경기 부진 심화로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반영하였음.

또한, 제2회 추경예산안은 크게 ① 소비·투자 촉진 등 경기 진작(15.2조원), ②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5.0조원)과 ③ 세입 경정(10.3조원)을 목적으로 구분됨.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30.5조원 규모 새정부 추경 편성’, '25.6.19.

□ 농림축산식품부의 세출 추경예산안은 경기 진작 측면에서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및 재해예방 등을 위한 농업 SOC를 보강하고 민생 안정 측면에서 축산농가 경영 및 물가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됨.

먼저, 가뭄·홍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상습 침수 농경지 해소를 위한 배수 개선, 태풍·해일 등 대비한 방조제 개보수 등 보강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또한, 폭설·산불 피해 축산농가 시설 신·재축,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 식품 제조업체 원료구매 지원 등 민생 안정 강화 예산을 편성하였음.

□ 구체적으로 추경예산안은 농특회계 3개 사업(농촌용수개발,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에서 1,188억원, 지특회계 1개 사업(배수개선)에서 250억원, FTA기금 1개 사업(축사시설현대화)에서 244억원, 농안기금 1개 사업(식품외식종합자금)에서 200억원 등 6개 세부사업에서 총 1,862억원이 추가 편성되었음.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총괄 】

(단위: 억원)

구 분	'25년		'25년 2회 추경안(B)	
	본예산	1회 추경(A)		증감(B-A, %)
· 총지출(예산+기금)	187,416	189,545	191,407	1,862(1.0%)
- 예산 일반지출	104,818	106,947	108,385	1,438(1.3%)
- 기금 일반지출	82,598	82,598	83,022	424(0.5%)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목적별로 살펴보면, 민생 지원 목적으로 2개 세부사업이, 농업 SOC 보강 목적으로 4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먼저, 민생 지원 목적으로 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에서 대설과 산불로 피해를 입은 축사 신·재축 지원을 위한 예산과 안정적 먹거리 공급 등을 위한 산란계 시설 개선 예산이,

②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에서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매입하는 식품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이 추가 반영되었음.

다음으로, 농업 SOC 보강을 목적으로 ③ 수리시설개보수, ④ 배수개선, ⑤ 농촌용수개발, ⑥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등 4개 세부사업에서 농업재해 예방을 위해 농업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음.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2회 추경안 세출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2025년도			
	제1회 추경(A)	제2회 추경안(B)	B-A	증가내역
총 계	1,799,815	1,985,970	186,155	
축사시설현대화(용자)	95,959	118,359	22,400	대설('24년 말), 산불('25.3월) 피해 축사 신·재축 지원을 위한 소요+안정적 먹거리 공급 등을 위한 산란계 시설 개선 소요
식품외식종합자금(용자)	163,368	183,368	20,000	국산 농산물을 가공원료로 매입하는 식품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소요
농촌용수개발	235,682	257,882	22,200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57,908	72,908	15,000	국가관리방조제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761,734	843,289	81,555	수원공 개보수 + 용·배수로 개보수
배수개선	485,164	510,164	25,000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배수로·배수문 등 부분준공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추경 편성 요건에 대한 검토

☐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²⁾에 따르면,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 세 가지 중 하나의 사유로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야 추경안을 편성할 수 있음.

한편,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목적적합성, 예측불가능성, 보충성, 시급성, 연내집행가능성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추 필요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일반요건】

구분	요건	세부내용
1	목적적합성	추경안 편성의 원인이 되는 상황을 완화·해소할 수 있을 것
2	예측불가능성	추경안 편성사유가 본예산 편성·심사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유일 것
3	보충성	예비비를 포함한 본예산 등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할 것
4	시급성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간적 급박함이 있을 것
5	연내집행가능성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경안을 구성할 것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p.42

□ 정부의 추경예산안 편성 개요를 보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추경의 편성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국가재정법」상 ‘경기침체’ 등에 근거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제출한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 편성 추경예산안 역시 축산농가의 경영과 민생 물가의 안정을 도모하고 SOC 사업 수행을 통해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임.

3) 농업 민생사업 반영 미흡에 대한 검토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추경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정책 대상인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 민생사업에 대한 예산의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당시에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2개 사업만을 반영한 바 있었음.

【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제1회 추경안 세출 사업내역 】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4년도 본예산	2025년도			
			본예산 (A)	추경안 (B)	증감 (B-A)	(B-A) /A
농특회계	농식품소비기반조성	123,649	123,424	173,424	50,000	40.5
농특회계	푸드서비스선진화	2,613	1,925	66,925	65,000	3,376.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2회 추경예산안 역시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는 농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농업 SOC 사업도 간접적으로는 농가를 지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농가가 직접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아니라 할 것임.

□ 최근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 전반의 경영비 부

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증가 및 이에 따른 농업 소득의 감소 등으로 농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무기질비료 지원’, ‘농업용 면세유 경유 포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 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요구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 건의문과 언론 기사³⁾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표출되고 있음.

【 농업 지원에 관한 지방의회 건의문 현황(2025년) 】

연번	내용	지방의회
1	무기질비료 지원	- 광역: 경상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 기초: 서산시의회, 거창군의회
2	농업용 면세유 경유 포함	- 광역: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기초: 남원시의회, 정읍시의회, 부안군의회, 순창군의회
3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 광역: 전라남도의회

※ 자료: 국회 전자문서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4. 21.

이에 지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 ‘무기질비료 지원’, ‘농업용 면세유 경유 포함’, ‘한우농가 사료비 지원’, ‘농사용 전기요금 지원’, ‘도축장 전기요금 지원’ 등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기도 하였음.

다만, 최종적으로는 ‘무기질비료 지원’ 예산(255억원)만이 일부 반영되었음.

3) 농민신문, “농업 지원 빠진 ‘12조 추경안’…국회 증액 절실”, 2025. 4. 20.
농민신문, “농업 민생사업에 예산 투입해야”, 2025. 6.20.

【 25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및 최종 의결 결과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상임위 증액	예결위 증액	비고
1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37,230	25,500	일부 금액 반영
2	시설농가 면세유유가 연동보조금 한시지원	11,893	-	
3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차액보전	82,881	-	
4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40,000	-	
5	농식품바우처	13,978	-	
6	농업자금 이차보전	13,006	-	
7	농촌고용인력지원	7,203	-	
8	농촌경제 활성화지원	3,500	-	
9	농기계임대	4,211	2,397	일부 금액 반영
10	농식품글로벌 경쟁력강화	1,000	-	
11	가축방역 대응지원	1,881	-	
12	농촌용수개발	5,500	-	
13	식물검역 검사 및 수출촉진	281	-	
14	곤충미생물산업 육성지원	400	-	
15	식품산업 인프라강화	300	-	
16	그린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700	-	
17	농식품소비 기반조성(농산물 할인지원)	-	70,000	당초 추경안 5백억 증액에 7백억 추가 증액

□ 따라서 이러한 농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농업 분야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농업 민생사업 예산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 추경안 편성 시 각 지구별 세부적 배정계획 마련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에서 개보수 사업 계속지구(18개소)에 대한 예산 150억원을 총액으로 편성했는데,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각 개별지구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바, 18개 지구별 세부적인 배정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⁴⁾은 노후된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사전에 보수·보강하여 시설물 붕괴, 농경지 유실 및 해수침투에 의한 농작물 염해 등의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관리방조제의 개보수 사업 계속지구(18개소)에 대한 예산 150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본 예산(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43,400	57,908	72,908	15,000	25.9

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4031-306)

(나) 검토의견

□ 「방조제 관리법」은 ‘농업을 목적으로 해안에 설치된 제방’인 방조제에 대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관리방조제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이하 “지방 관리방조제”라 한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⁵⁾

【 국가 관리방조제와 지방 관리방조제의 조건 】

연번	구분	조건
1	국가 관리방조제	1. 포용조수량 1천만 m^3 이상인 간척지 방조제 2. 포용조수량 7백만~1천만 m^3 , 대안거리 4km 이상인 간척지 방조제 3.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방조제 가. 포용조수량 7백만~1천만 m^3 , 대안거리 4km 미만 방조제 나. 포용조수량 3백만~7백만 m^3 , 대안거리 4km 이상 방조제
2	지방 관리방조제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 (자세한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주1: 포용조수량은 최고 만조 시에 간척지에 유입될 조수(潮水)의 양임

* 주2: 대안거리(對岸距離)는 항만 또는 해안에서 바람에 의한 파도의 크기를 추정할 때, 그 지점까지 바람이 일정한 풍속 및 풍향을 가지고 장애물 없이 바다 위를 불어온다고 가정하는 수평거리임

※ 자료: 국회법률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작성, 2025. 6. 22.

5) 「방조제 관리법」

제3조(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제3조의2(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국가 관리방조제와 지방 관리방조제의 조건을 살펴보면, 포용조수량과 대안거리(對岸距離)의 두 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대형 방조제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그 외 방조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구분하는 것으로 보임.

이번 추경안은 동 사업의 국가 관리방조제 개보수 계속사업지 18개소에 대한 예산 증액으로, 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에 대하여는 본 예산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데,

이는 지방 관리방조제의 경우 국고보조율이 50%로서, 추경안에서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가 함께 반영되지 않으면 후속 진행과정이 지연되기 때문으로 보임.

【 국가 관리방조제와 지방 관리방조제의 기준보조율 】

연번	구분	기준보조율
1	국가 관리방조제 개·보수	100%
2	지방 관리방조제 개·보수	50%

※ 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 1]

□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을 통하여 이들 18개소에 대한 150억원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지만, 150억원을 어느 지구에 얼마나 배정할지에 대한 계획은 추경안 제출 시점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국가 관리방조제 개보수 계속사업지 현황 】

(단위: 년, 백만원, %)

연번	지구	소재지		사업기간		2025년 예산		
		광역시	기초	착공	준공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1	하리	인천 (1)	강화	2023	2026	1,378	1,142 (914)	82.9 (66.3)
2	아산	경기 (2)	평택	2022	2026	4,800	3,979 (3,315)	82.9 (69.1)
3	화옹		화성	2024	2028	100	83 (66)	83.0 (66.0)
4	삼교천2	충남 (6)	당진	2019	2026	3,400	2,819 (2,255)	82.9 (66.3)
5	해바라기			2022	2026	845	701 (560)	83.0 (66.3)
6	대천1		보령	2023	2027	1,195	991 (793)	82.9 (66.4)
7	대호2		서산	2022	2027	1,637	1,357 (1,086)	82.9 (66.3)
8	이원		태안	2023	2028	100	83 (-)	83.0 (-)
9	서산A2		홍성	2021	2027	1,176	975 (780)	82.9 (66.3)
10	금강하구둑	전북 (1)	군산	2023	2027	1,109	919 (736)	82.9 (66.4)
11	고흥만	전남 (8)	고흥	2022	2026	3,500	2,902 (2,321)	82.9 (66.3)
12	해창만			2024	2026	3,500	2,902 (2,321)	82.9 (66.3)
13	창포		무안	2024	2028	100	83 (-)	83.0 (-)
14	보성		보성	2023	2026	605	502 (401)	83.0 (66.3)
15	마명		신안	2024	2028	100	83 (66)	83.0 (66.0)
16	영암		영암	2023	2026	1,944	1,612 (1,289)	82.9 (66.3)
17	세동		완도	2022	2026	2,271	1,883 (1,506)	82.9 (66.3)
18	해창		장흥	2024	2026	499	414 (331)	83.0 (66.3)
합계						28,259	23,430 (18,740)	82.9 (66.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 국가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 사업 세부내용 및 산출근거 】

□ (요구) 노후 방조제의 안정성 확보 및 농업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국가관리 방조제개보수 계속 18지구 150억원 증액 필요

□ (산출) 계속 18지구 × 1,737백만원(2025년 본예산)
→ 계속 18지구 × 2,570백만원(2025년 제2회 추경안)

※ 18지구 × (2,570 - 1,737)백만원 = 18지구 × 833백만원 ≒ 15,000백만원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2025, p. 28.

사업설명자료에서는 18개의 계속사업 지구마다 약 8억 3,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계속사업 지구마다 2025년 예산이 적게는 1억원, 많게는 48억원에 걸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나 지구별 배정금액을 추산할 수는 없어 보임.

□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은 현재 공사 중인 계속지구를 대상으로 배수갑문 등의 시설물 보수 중심으로 집행할 것이며, 지구별 배정은 추경안 증액분 산출근거를 토대로 검토하여 배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임.

그러나,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은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추경안)에 대하여 단순히 총액만을 심의·확정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개별 예산에 대한 필요성·규모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는 과정임.

계속지구마다 배정된 예산액에 차이가 있고, 일부 지구의 경우 아직 실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 심사과정에서는 개별 지구의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임.

그런데, 개별 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배정계획이 없는 이상, 국회는 동 사업에 대하여 단순히 국가의 재해대응에 대한 당위성과 이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 측면만을 논의할 수 있을 뿐,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개별 지구의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 편성 시 단순히 총액에 대한 증액분만을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개별 지구에 대한 세부적인 배정계획을 마련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음.

2) 수리시설개보수 : 추경으로 배정된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문제가 나타나고, 2025년 예산 집행에서는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바, 추경으로 배정된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⁶⁾은 노후·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의 보수·보강 등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원공 및 용·배수로의 개보수 사업 계속지구의 공사비 예산 815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본예산(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
수리시설개보수	746,169	761,734	843,289	81,555	10.7

6)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수리시설개보수(4038-700)

(나) 검토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추경안을 통하여 수리시설 중 ① 저수지, 양·배수장 등의 수원공⁷⁾과 ②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의 계속지구에 대한 예산을 각각 200억원 및 615억 5,500만원 증액하여, 총 815억 5,500만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저수지, 양·배수장 및 용·배수로 시설 개요 】

연번	구분	시설 개요	예시사진
1	저수지	- 관개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하천에 댐을 축조하여 저수하는 시설로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부지를 말함	
2	양수장	- 농지의 용수개량을 목적으로 강이나 하천의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양수하는 시설	
3	배수장	- 배수가 불량하거나 홍수시 물이 하천이나 강 또는 호소로 빠지지 못하여 농경지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물을 배수하는 시설	
4	용수로	- 관개용수를 농지에 송수 또는 분배하기 위한 수로	
5	배수로	- 잉여수나 지표수를 배출하기 위한 인공 또는 자연적인 수로를 말함	

※ 자료: 한국농어촌공사 기획조정실, 2025. 1. 16.

7) 일정한 수혜 구역 내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려고 인위적으로 물을 모아 도수(導水)하거나 배수하는 시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2025. 6. 21. 확인

참고로, 현재 수원공 개보수 계속지구는 149개소, 용·배수로 개보수 계속지구는 146개소가 있으며, 지역별로는 아래의 표와 같이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계속지구가 분포되어 있음.

【 수원공 및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계속사업지 현황 ① 】

(단위: 지구, 백만원, %)

연번	광역 지자체	수원공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계속 지구 수	2025년 예산			계속 지구 수	2025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1	부산	1	1,460	255 (255)	17.5 (17.5)	1	1,020	584 (584)	57.3 (57.3)
2	인천	1	800	400 (-)	50.0 (0.0)	1	700	350 (227)	50.0 (32.4)
3	대구	1	1,800	769 (222)	42.7 (12.3)	3	2,365	1,686 (1,448)	71.3 (61.2)
4	대전	-	-	-	-	2	1,660	701 (103)	42.2 (6.2)
5	광주	1	370	- (-)	0.0 (0.0)	2	2,075	1,280 (480)	61.7 (23.1)
6	울산	1	1,640	1,602 (536)	97.7 (32.7)	1	875	465 (265)	53.1 (30.3)
7	세종	-	-	-	-	2	2,151	1,515 (850)	70.4 (39.5)
8	경기	14	18,083	9,973 (6,825)	55.2 (37.7)	12	9,995	6,386 (4,467)	63.9 (44.7)
9	강원	5	4,070	1,550 (1,450)	38.1 (35.6)	8	6,875	4,290 (3,730)	62.4 (54.3)
10	충북	19	19,920	9,921 (8,256)	49.8 (41.4)	12	9,415	5,575 (4,364)	59.2 (46.4)
11	충남	20	23,100	11,275 (6,646)	48.8 (28.8)	23	20,250	11,146 (6,361)	55.0 (31.4)
12	경북	8	8,570	4,633 (3,334)	54.1 (38.9)	12	9,530	6,033 (4,810)	63.3 (50.5)
13	경남	20	26,020	14,653 (9,552)	56.3 (36.7)	14	11,105	6,621 (4,809)	59.6 (43.3)

연번	광역 지자체	수원공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계속 지구 수	2025년 예산			계속 지구 수	2025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실집행액)	집행률 (실집행률)
14	전북	19	30,733	14,916 (8,229)	48.5 (26.8)	24	20,115	11,747 (7,189)	58.4 (35.7)
15	전남	38	36,039	19,630 (11,354)	54.5 (31.5)	28	23,935	15,040 (9,060)	62.8 (37.9)
16	제주	1	1,300	359 (353)	27.6 (27.2)	1	1,300	1,040 (739)	80.0 (56.8)
합계		149	173,905	89,936 (57,012)	51.7 (32.8)	146	123,366	74,459 (49,486)	60.4 (40.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 수원공 및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 계속사업지 현황 ② 】

연번	광역 지자체	수원공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계속 지구 수	세부지구	계속 지구 수	세부지구
1	부산	1	해포(강서)	1	가락(강서)
2	인천	1	양도(강화)	1	아라(계양)
3	대구	1	금포(달성)	3	노홍·달천·옥포동부(달성)
4	대전	-	-	2	장안(서구)·대동(유성)
5	광주	1	석문(광산)	2	구소(남구), 용전(북구)
6	울산	1	인보두산(울주)	1	월평(울주)
7	세종	-		2	노송·동부
8	경기	14	태리·양곡(김포), 동방(화성), 만수·진사(안성), 백운(의왕) 선곡·전동·백학(연천), 내천·대안·마산(평택), 삼인동2(용인), 홍부(시흥),	12	구장·안택8(안성), 이정(포천), 천서·홍천2(여주), 강상(양평), 현영(파주), 포승·진위(평택), 장안4·호곡(화성), 대화(고양)
9	강원	5	용화·평남2·산명(철원), 양구(양구), 홍천(홍천)	8	어단·미노(강릉), 원암(속초), 섬강(원주), 뇌운(평창), 관우(철원), 양적·추동(횡성)

연 번	광역 지자체	수원공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계속 지구 수	세부지구	계속 지구 수	세부지구
10	충북	19	추산(괴산), 고승·쌍암1(보은), 금고·봉전·삼용·내산(음성), 고당·송호(영동), 자래(진천), 노산·화죽·강내·작천2(청주), 원곡·동량2·영죽(충주), 서대·농암(옥천)	12	원남3(증평), 대양·학림(보은), 금대·삼봉·오류(음성), 노원·월성(진천), 제천(제천) 비흥·입상·탐리(청주),
11	충남	20	갈산·봉화1·원남1·강경·봉화2 (논산), 홍림·완포(서천), 고대2·송악·남산·대호2(당진), 마정2·정동3·정동4·자왕2 ·현북(부여), 염성(아산), 월티1(보령), 사기1(서산), 삼은(천안)	23	용봉·유계(공주), 금마4(홍성) 시묘·주곡(논산), 원평(예산), 우일·합덕5(당진), 신법(아산), 증산·수부·재정(보령), 중정2·신흥·양화2(부여), 남성2·도둔·옥포(서천), 대산(서산), 동평·양당(천안), 적누·신대2(청양)
12	경북	8	외촌(경산), 석대(경주), 성곡(영주), 노방·매왕(영천), 풍강(안동), 풍효(예천), 지동(칠곡)	12	개진·신안(고령), 창우(문경), 성동(상주), 황계·신화(영천), 성락(성주), 노음1(울진), 단밀2(의성), 오기감은(영양), 어천(청송), 오덕(칠곡)
13	경남	20	대개[PMF]·무선(고성), 봉하(김해), 금포·웅동(밀양), 정곡·오운(의령), 상미·월정(진주), 가덕1·금남(하동), 옥천·마산2·월곡(창녕), 미남·월촌·옥열(합안), 오서·성산·합천(합천)	14	대천한들·보산(함양), 양화(고성), 마찰(김해), 국전(밀양), 축동(사천), 마정2(의령), 냉정(진주), 합리이방(창녕), 근곡(창원), 연죽(남해), 궁항(하동), 구혜(합안), 가삼(합천)
14	전북	19	고창(고창), 모시(무주) 개정·수시·대간선1(군산), 불로·성덕2·청하·만경(김제), 운암(임실), 언백·하장(부안), 내령(순창), 연동(익산), 하리(완주), 백석·은석(전주), 정잠·내장(정읍)	24	화등·옥봉1·원우(군산), 죽산2·만경2·백산(김제), 상서·마포·줄포(부안), 신흥·구림·풍산(순창), 수양·구암(고창), 다송·정죽동(익산), 고기·금사(남원), 오성·계북(장수), 성재·수계(완주), 청산·감학(정읍)

연 번	광역 지자체	수원공 개보수		용·배수로 개보수	
		계속 지구 수	세부지구	계속 지구 수	세부지구
15	전남	38	영산(강진), 오도장암·당두(고흥), 온당(구례), 가흥·나주호5 ·반월·봉황·신가·회룡(나주), 상신(담양), 담양호(순창), 봉산·해제(무안), 도춘(보성), 도룡(순천), 신월(영광), 소포(진도), 산호·군서·학과·시종2·군서2 ·미암·시종(영암), 궁산(함평), 도수2·월야·월애[간](장성), 성농·오송·죽청(장흥), 남동·신덕2·구가학2·옥연1 (해남), 독상·품평(화순)	28	움천·금사(강진), 풍도(고흥), 겸면(곡성), 토지(구례), 고금(완도), 영산부덕(나주), 삼산(해남), 대방·운암(담양), 마천(보성), 감돈·명산(무안), 비금(신안), 낙안(순천), 옥곡(광양), 도평(진도), 군남·군서(영광), 대덕(장흥), 해창·서호6(영암), 동화·우치(장성), 손불·해보(함평), 능주·원리(화순)
16	제주	1	수산광령(제주)	1	용수일과(제주)
합계		149	-	146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의 필요성으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및 가뭄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노후 수리시설 기능 저하로 인하여 안전성 확보와 기능 회복이 시급한 실정임을 제시함.

추경안을 통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계속지구 예산을 증액한다면, 이와 같은 개보수의 시급성에 대하여 보다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동 사업은 최근 3년간 모두 이월이 발생한 연례적 이월사업으로, 이월액 규모는 2022년에 690억원, 2023년에 1,274억 900만원, 2024년에 1,740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최근 3년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 등	예비 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 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1	2022년	651,009	651,009	-	-	-	651,009	582,009 (582,009)	69,000	-
2	2023년	651,832	651,832	69,000	-	-	720,832	593,423 (593,423)	127,409	-
3	2024년	746,169	746,169	127,409	-	-	873,578	694,085 (694,085)	174,000	5,49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19.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산의 이월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주 세입원인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이라는 의견임.

□ 다만, 매년 편성된 본예산만으로도 이월액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추경을 통하여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이월 발생 및 이월액 증가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세출예산의 이월은 「국가재정법」 제48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같은 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점을 고려하면,⁸⁾ 이와 같은 연례적인 이월은 지양될 필요가 있음.

8)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 이러한 세수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 외에도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예산의 이월도 발생할 수 있음.

즉, 2025년 상반기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수원공 및 용·배수로 개 보수 계속지구 295개소 중 실집행률이 60% 미만인 지구가 226개소(76.6%)에 달하는 상황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하반기 내에 추경안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포함한 예산을 모두 집행하여야 하는데, 현재 실집행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집행가능성과 이월에 대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어 보임.

【 2025년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계속사업지 실집행 현황 】

(단위: 개소, %)

연번	광역시자체	지구 수	실집행률별 지구 수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	부산광역시	2	1	-	1	-	-
2	인천광역시	2	1	1	-	-	-
3	대구광역시	4	1	-	1	2	-
4	대전광역시	2	2	-	-	-	-
5	광주광역시	3	2	1	-	-	-
6	울산광역시	2	-	2	-	-	-
7	세종특별자치시	2	-	1	1	-	-
8	경기도	26	9	5	4	4	4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연번	광역지자체	지구 수	실집행률별 지구 수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9	강원특별자치도	13	3	3	3	4	-
10	충청북도	31	10	7	7	4	3
11	충청남도	43	22	5	9	6	1
12	경상북도	20	4	5	4	5	2
13	경상남도	34	10	10	5	9	-
14	전북특별자치도	43	19	12	3	4	5
15	전라남도	66	27	14	9	9	7
16	제주특별자치도	2	-	1	1	-	-
합계		295 (100.0)	111 (37.6)	67 (22.7)	48 (16.3)	47 (15.9)	22 (7.5)

* 주1: 지구 수는 수원공 및 용·배수로 지구를 모두 더한 것임

* 주2: 예산 배정액이 0인 지구의 실집행률은 100%로 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일부 재가공)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에서 세수부족으로 인한 연례적 이월 문제가 나타나고, 2025년 예산 집행에서는 실집행 부진으로 인한 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바, 추경으로 배정된 자금을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 농촌용수개발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의 철저한 집행 관리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의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동 내역사업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농촌용수개발 사업⁹⁾의 내역사업인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과 제주 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각각 저수지·양수장 등의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의 농업·생활·환경용수 등을 확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 용수원개발·관로연계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가뭄 대비 및 복합영농을 위한 농업용수 확보 조기 달성과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의 계획년도 준공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 222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농촌용수개발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본예산(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
농촌용수개발	251,348	235,682	257,882	22,200	9.4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166,522	173,482	180,682	7,200	4.2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8,000	5,000	20,000	15,000	300.0

9)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촌용수개발(4046-300)

□ 참고로, 내역사업인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계속사업지 34지구 중 23지구에 대한 예산을 72억원 증액하는 것임.

【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 계속사업지 현황 】

연번	지구	소재지		사업기간(년)		연번	지구	소재지		사업기간(년)	
		광역시	기초	착공	준공			광역시	기초	착공	준공
1	매음	인천 (1)	강화	2024	2028	18	장기	경북 (3)	포항	2024	2027
2	점동	경기 (4)	여주	2020	2029	19	용포		상주	발주 전	
3	북내			2023	2028	20	서벽		봉화	2024	2027
4	민북		파주	2024	2027	21	마동	경남 (5)	고성	2002	2027
5	개군·대신		양평	설계중		22	마곡		사천	2019	2026
6	울리	강원 (3)	철원	2022	2029	23	고품		함천	2022	2026
7	서상		춘천	2024	2027	24	청도		밀양	2023	2029
8	강릉		강릉	설계중		25	특리		산청	설계중	
9	가덕	충북 (2)	청주	발주중		26	장선	전북 (3)	완주	2005	2027
10	동부		충주	설계중		27	낭산		익산	2023	2028
11	왕승	충남 (7)	천안	2016	2027	28	상정		정읍	2024	2027
12	시전		청양	2024	2028	29	월남	전남 (6)	강진	2019	2027
13	덕곡		공주	2023	2028	30	팔금		신안	2021	2026
14	계실			2024	2030	31	금천		신안	설계중	
15	탄천		공주	설계중		32	상금		장흥	2024	2028
16	광석		논산	설계중		33	풍도		고흥	2024	2026
17	판교		보령	설계중		34	석곡		곡성	설계중	

* 주: 음영 표시된 23개 지구가 증액 대상 지구임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6. 20. (일부 재가공)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사업은 제주지역의 농업용수 급수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화함으로써 지역 내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8년까지 12년간 총사업비 1,583억 7,600만원(국비 1,241억 7,200만원, 지방비 342억 4백만원) 규모로 실시되는 사업이며, 2024년까지 총사업비의 48.8%에 해당하는 773억 2,000만원(국비 620억 9,000만원, 지방비 152억 3,000만원)을 집행함.

【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 개요 】

- 목적: 제주지역의 농업용수 급수관리체계를 통합하여 광역화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
- 총사업비: 1,583억 7,600만원(국비 1,241억 7,200만원, 지방비 342억 400만원)

(단위: 백만원, %)

구분	합계	'24년까지	'25년(계획)	'26년 이후(계획)
총사업비	158,376 (100.0)	77,320 (48.8)	6,250	74,806
- 국비	124,172 (100.0)	62,090 (50.0)	5,000	57,082
- 지방비	34,204 (100.0)	15,230 (44.5)	1,250	17,724

- 수혜면적: 32,755ha(신규 5,674ha, 보충 27,081ha)
- 사업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 6개소, 대용량 저수조 56개소, 용수관로 472.5km, 물관리 자동화시설 1식
- 사업기간: '17년 ~ '28년 (12개년)
- 사업시행자: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일괄 위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6. 19.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화산지형인 현무암 토양으로 이루어져 자연적으로 배수가 활발한 특성상, 2017년부터 동 내역사업을 통하여 제주 외 지역(다목적농촌용수개발 내역사업)과는 분리하여 용수 개발을 진행함.

동 내역사업의 2025년 본예산은 50억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내역사업에서 2025년에 국비 50억원과 지방비 12억 5,000만원의 총 62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2025년까지 총사업비의 52.8%, 총사업비 중 국비의 경우 54.0%를 집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음.

□ 그런데, 이번 추경안에서는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150억원 증액하였는데, 해당 증액분은 본예산인 50억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추경안대로라면 총사업비 내에서 국비를 2025년까지 54.0%가 아닌 66.1%를 집행하게 됨.

이는 2025년 예산안 편성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지하수 관정 개발에 대한 행정적 협의과정이 지연됨에 따라, 동 내역사업 역시 일부 지연될 것으로 보여, 2025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50억 원만을 편성하였기 때문임.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장 제2절(제377조~제394조)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지하수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고,¹⁰⁾ 그 개발·이용 등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¹¹⁾의 사항을 규정함.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협의가 성사되어 자연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연내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바,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150억원 증액하여 200억원으로 하는 추경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임.

【 2025년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 예산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5. 5월말 기준)					
	본 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본 예산	제1회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	8,000	8,000	8,000 (8,000)	5,000	5,000	-	-	5,000	4,000 (1,5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기반과, 2025. 6. 19.

□ 연내 추가적인 사업 진행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번 추경안을 통하여 동 내역사업의 예산을 증액한다면, 제주지역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가 나타나, 동 내역사업의 수혜를 받는 제주지역 농민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됨.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장 환경의 보전 제2절 지하수 보전·관리 등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등) ① 제주자치도에 부존하는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으로써 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한다.

1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지하수개발·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9조의4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지하수, 샘물 또는 염지하수를 개발·이용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제38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인공함양시설 설치 등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 다만,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본예산 50억원 중 40억원(80.0%)을 집행하였으나, 현장의 기성처리¹²⁾ 및 보상비 등의 지급을 위한 행정 처리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실집행액은 15억원으로서 실집행률이 30.0%에 불과한 상황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경안을 편성함에 따라, 실집행 단계에서는 총 200억원의 예산 중 185억원(92.5%)이 연내에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의 실집행 가능성 측면에서 우려가 있어 보임.

특히, 동 내역사업의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에 하반기 위주의 공정계획 수립 및 12월 농어촌특별세 수납액의 1월 납입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9.5%에 그쳤던 바 있음.

【 최근 5년간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 결산 현황 】

(단위: 백만원, %)

구분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 전용등	예산 현액	집행액(B) [실집행액]	집행률 (B/A)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1	2020	14,000	7,000	-	-	7,000	7,000 [7,000]	100.0	-	-
2	2021	12,000	12,000	-	-	12,000	12,000 [12,000]	100.0	-	-
3	2022	17,500	10,500	-	-	10,500	1,000 [1,000]	9.5	9,500	-
4	2023	8,000	8,000	9,500	-	17,500	17,500 [17,500]	218.8	-	-
5	2024	8,000	8,000	-	-	8,000	8,000 [8,000]	100.0	-	-

※ 자료: ① 농림축산식품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5.

② 농림축산식품부, “2023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 2024.

12) 공사 진행률에 따라 부분적으로 나누어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이번 추경안에 따른 예산 집행 역시, 편성 시기를 고려하면 하반기 위주의 계획이 수립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동일한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집행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을 통하여 제주농업용수통합광역화 내역사업에 본예산의 3배에 달하는 150억원이 추가적으로 편성됨에 따라, 사업의 실행 가능성에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4) 배수개선 : 실집행이 부진한 계속지구에 대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안에 따른 증액분을 개별지구에 신속히 배정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집행이 부진한 배수개선 계속지구에 대하여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배수개선 사업¹³⁾은 홍수시 침수피해를 겪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의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려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안은 사업 계속지구 183개소의 공사비 증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내역사업의 예산 250억 원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배수개선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5년			
		본예산(A)	제2회 추경안(B)	증감(B-A)	%
배수개선	453,525	485,164	510,164	25,000	5.2
- 사업비	441,353	477,128	502,128	25,000	5.2
- 기본조사비	12,172	8,036	8,036	-	-

13) 회계(기금)-세부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배수개선(4031-300)

(나) 검토의견

□ 내역사업인 사업비 사업은 또 다른 내역사업인 기본조사비 사업 이후 배수장·배수문·배수로 설치, 복토 등의 배수개선 작업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5년 본예산은 4,413억 5,300만원이며, 이는 ① 준공지구(42개소) 사업비 1,049억 3,900만원, ② 계속지구(183개소) 사업비 3,661억 8,900만원 및 ③ 신규지구(60개소) 사업비 60억원으로 구성됨.

【 배수개선 사업내용 개요 】

연번	구분	사업내용	예시사진
1	배수장	- 하천수위가 높을 때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배제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배수장을 설치하여 강제배제	
2	배수문	- 농경지 내에서 하천 등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농경지 말단 제방에 배수문을 신설·확대하여 자연배제	
3	배수로	- 농경지 내 배수로가 없거나, 협소한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로 신설·확장 및 현대화	
4	복토	- 농경지내에 표고가 낮아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에 양질토로 논 표고를 높여 침수피해 방지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19.

□ 이번 추경안은 배수개선 사업의 계속지구 183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250억원 증액하려는 것인데,

이들 계속지구 183개소는 지역별로 ① 부산 1개소, ② 인천 2개소, ③ 대구 2개소, ④ 광주 2개소, ⑤ 경기 13개소, ⑥ 강원 10개소, ⑦ 충북 7개소, ⑧ 충남 22개소, ⑨ 경북 14개소, ⑩ 경남 23개소, ⑪ 전북 38개소, ⑫ 전남 43개소, ⑬ 제주 6개소로 분포함.

【 배수개선 사업 계속사업지 현황 ① 】

(단위: 지구, 백만원, %)

연번	광역시자체	지구 수	2025년 예산		
			예산액	집행액(실집행액)	집행률
1	부산광역시	1	2,000	1,600 (1,600)	80.0 (80.0)
2	인천광역시	2	2,600	2,100 (2,100)	80.8 (80.8)
3	대구광역시	2	4,151	3,351 (3,351)	80.7 (80.7)
4	광주광역시	2	5,000	3,952 (3,952)	79.0 (79.0)
5	경기도	13	20,753	15,150 (15,150)	73.0 (73.0)
6	강원특별자치도	10	13,340	10,160 (10,160)	76.2 (76.2)
7	충청북도	7	11,108	7,800 (7,800)	70.2 (70.2)
8	충청남도	22	37,999	29,814 (29,814)	78.5 (78.5)
9	경상북도	14	28,370	19,899 (19,899)	70.1 (70.1)
10	경상남도	23	50,372	33,000 (33,000)	65.5 (65.5)
11	전북특별자치도	38	79,207	57,261 (57,261)	72.3 (72.3)
12	전라남도	43	84,789	58,294 (58,294)	68.8 (68.8)
13	제주특별자치도	6	16,500	11,883 (11,883)	72.0 (72.0)
합계		183	356,189	254,264 (254,264)	71.4 (71.4)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 배수개선 사업 계속사업지 현황 ② 】

연번	광역시자치	지구 수	세부 지구
1	부산광역시	1	식만(강서)
2	인천광역시	2	지석(강화), 홍왕(강화)
3	대구광역시	2	현풍(달성), 이달박(달성)
4	광주광역시	2	연산(광산), 요기(광산)
5	경기도	13	백사·대서(이천), 건천·삼암구장(안성), 동방·이화(화성), 어연2·내천2(평택), 용담(용인), 고양풍동·사리현백제(고양), 눌노(파주), 광주(광주),
6	강원특별자치도	10	동송·도창(철원), 동덕·송정운정·박월(강릉), 신별·양계(철원), 후용(원주), 손양(양양), 도원(고성)
7	충청북도	7	병암·생곡(음성), 보은장암(보은), 인산(진천), 학소·서당(청주), 봉곡(영동)
8	충청남도	22	오산·오강·숙진·왕전·장구(논산), 적곡·청소(청양), 중방·신리(당진), 운전·어룡·발산장산(천안), 평촌·추부(금산), 부여석우·정동1·외산·동방1(부여), 중예(예산), 상서(공주), 홍성(홍성), 근흥(태안)
9	경상북도	14	청리·소암·대봉(상주), 봉산·김천장암·황계(김천), 안림·연직(고령), 라원(경주), 신촌[포상](구미), 칠곡덕산(칠곡), 안교·신성(안동), 고평(예천),
10	경상남도	23	예안·시산(김해), 환곡·진창·가항(창녕), 화제(양산), 덕곡·광암·갑산(합천), 부림·오산·예림(밀양), 화심·목도(하동), 덕오·금평·마성2(진주), 백곡(의령) 악양·유천(함안), 북면·제동(창원), 송림(사천)
11	전북특별자치도	38	황등·익산화산·화산2·동연·왕궁(익산), 도도(전주), 난봉·석담·종신·광활3·신호·서포·성덕1·성덕2(김제), 평령·석우·용흥·백운3·평령2(정읍), 어전(완주) 접산·하리·월하·월연·창오(군산), 유등(순창), 세전·방동2·부절(남원), 강남·신림(고창), 대량(진안), 동진2·줄포·용적·양산(부안), 봉덕·산서1(장수),
12	전라남도	43	의신·고군·군내·고야·명금·지산(진도), 충도·삼산·세동(완도), 오사·송금·금이(광양), 용당·독천·금강태백·방축(영암), 도개(보성), 유각·산두(신안), 학교·제동·용흥(합평), 오호·고천암2 ·고천암3(해남), 월송·세지·양신(나주), 양곡·금산2 ·청망·석용(무안), 강산·내봉(고흥), 응용·성월(담양), 화순덕곡·도곡2(화순), 덕산(보성), 하사(영광), 신흥·장성우치(장성), 도암(강진)
13	제주특별자치도	6	평대1·송당2(제주), 영락·한남2·수산2·신평(서귀포)
합계		183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동 추경안으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상습침수 저지대 농경지 문제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런데, 추경안이 제출된 현재(2025년 6월)는 여름으로, 집중호우 등이 발생하는 장마철이 도래하고,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배수장·배수문·배수로 등의 가동이 필요한 주요 시기임.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진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연내 집행이 가능한 계속지구를 검토하여 증액분을 배정할 계획이라는 의견인데,

증액된 예산을 각 계속지구에 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안을 통하여 올해 발생하는 집중호우 등에 대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장마 시작일 및 종료일 현황 】

연번	구분	중부지방			남부지방			제주특별자치도		
		시작	종료	기간	시작	종료	기간	시작	종료	기간
1	2022년	6. 23.	7. 25.	33일	6. 23.	7. 25.	33일	6. 21.	7. 24.	34일
2	2023년	6. 26.	7. 26.	31일	6. 25.	7. 26.	32일	6. 25.	7. 25.	31일
3	2024년	6. 29.	7. 27.	29일	6. 22.	7. 27.	36일	6. 19.	7. 27.	39일

* 주: ① 중부지방은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을 의미하고,

② 남부지방은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북, 경남, 전북, 전남을 의미함

※ 자료: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2025. 6. 21. 확인

또한, 실제로 장마철·태풍 등에 따른 호우가 발생하는 여름에는 배수시설 공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연내에 증액분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또한 부족할 수 있음.

- 한편, 동 사업의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상반기가 종료되는 시점임에도 전체 계속지구 183지구 중 49지구(26.8%)의 실집행률이 60% 미만에 해당하여 부진한 상황임.

【 2025년 배수개선 사업 계속사업지 실집행 현황 】

(단위: 지구, %)

연번	광역시·자치체	지구 수	실집행률별 지구 수				
			0% 이상 20% 미만	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 80% 미만	80% 이상
1	부산광역시	1	-	-	-	-	1
2	인천광역시	2	-	-	-	1	1
3	대구광역시	2	-	1	-	-	1
4	광주광역시	2	-	-	-	1	1
5	경기도	13	2	1	1	4	5
6	강원특별자치도	10	-	-	-	8	2
7	충청북도	7	-	-	1	5	1
8	충청남도	22	5	1	1	5	10
9	경상북도	14	-	3	-	11	-
10	경상남도	23	5	1	3	6	8
11	전북특별자치도	38	4	2	4	19	9
12	전라남도	43	3	2	9	11	18
13	제주특별자치도	6	-	-	-	6	-
합계		183 (100.0)	19 (10.4)	11 (6.0)	19 (10.4)	77 (42.1)	57 (31.1)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업시설안전과, 2025. 6. 20. (일부 재가공)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추경안 편성에 따른 증액분이 반영되는 경우, 실집행이 부진한 계속지구에 대한 연내 예산 집행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임.

-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추경안에 따른 증액분을 신속히 배정함과 동시에, 현재 실집행 단계에서 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계속지구에 대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5)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구조 개선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출근거 보완 등 필요

-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지원이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고 있으므로, 사업의 신규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홍보 강화가 필요해 보임.
-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산출근거(지원단가)가 미흡하고, 최근 실제 융자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자의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 방안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사업 개요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¹⁴⁾의 내역사업인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은 식품제조업체 등에 국산 농산물 매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임.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변경안”이라 함)은 식품기업의 국산 농산물 구매 정책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 200억원을 증액하였음.

【 2025년도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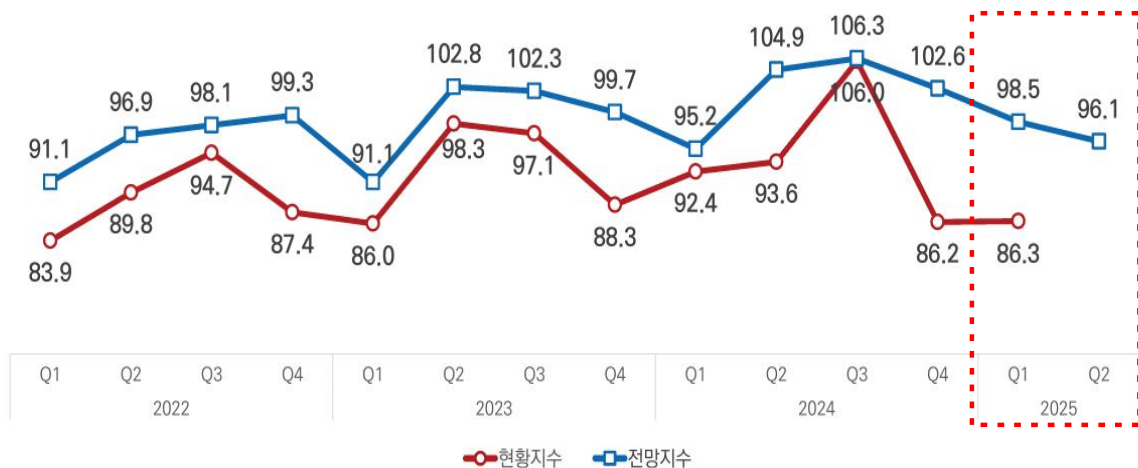
사 업 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액(A)	변경안(B)	증감(B-A)	%
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	144,633	163,368	183,368	20,000	12.2
식품가공원료매입	96,833	105,568	125,568	20,000	18.9
농식품시설현대화	9,000	4,000	4,000	-	-
외식업체육성	15,000	30,000	30,000	-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지원	23,800	23,800	23,800	-	-

14) 회계(기금)-세부사업: 농산물가격안정기금-식품외식종합자금(융자)(2851-345)

(나) 검토의견

□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¹⁵⁾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식품산업 전반에 대한 지수¹⁶⁾는 86.3으로 기준선(100)을 하회하여 경기 악화를 체감하는 업체가 많은 상황임. 또한, 2분기 경기전망지수는 96.1로,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

【 식품산업 경기동향 추이 】



※ 자료: 「통계로 본 2024년~2025년 1분기 식품제조업 동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5.)

□ 이와 더불어, 2025년 1분기에는 전분기 대비 국내 농산물 원재료의 가격은 8.2% 상승, 수입 농산물 가격은 7% 상승하였고, 전기요금(9.7%)¹⁷⁾ 및 인건비(1.7%)¹⁸⁾ 등이 인상됨에 따라, 식품기업의 경영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15) 「2025년 식품산업 경기동향조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5.4.)

16) 식품산업 경기지수는 식품산업의 체감경기를 파악하기 위해 식음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최저 0, 보통 100, 최고 200까지의 값으로 표현되고 있음.

17) 산업용 전기요금 평균 9.7% 인상 (2024.10.)

18) 2025년 최저시급 인상: 9,860원 → 10,030원

【 국내 농가판매 가격지수 현황 】

농가판매 가격지수	2024년 2분기	2024년 3분기	2024년 4분기	2025년 1분기	2024년 4분기 대비 증감
총지수	115.9	114.1	113.7	121.9	8.2 %p
곡물	102.9	92.3	91.8	97.3	5.5 %p
청과물	139.3	136.5	131.9	147.0	15.1 %p
축산물	102.0	104.9	106.9	107.1	0.2 %p
기타농산물*	116.6	117.4	121.8	142.6	20.8 %p

* 2020년 = 100 기준

* 기타농산물: 곡물, 청과물, 축산물 외의 참깨, 표고버섯, 국화 등 농산물

※ 자료: 통계청, KOSIS 국가통계포털

【 농산물 원재료 국제(수입)가격 지수 】



*1995.12. = 100 기준

※ 한국수입협회 국제원자재가격정보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은 식품제조업체에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으로,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식품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함.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¹⁹⁾에 근거하여 2011년부터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 이하 “aT”라 한다)가 주관해왔으며, 농식품 분야 식품제조업체(69,498개) 및 전통주류제조면허 소지업체(1,812개)를 대상으로 업체당 50억원 이내의 자금을 1년간(전통주류 2년²⁰⁾) 저리(2.5~3%)로 융자해주고, 국산 농산물을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구매하도록 함.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개요 】

구 분	내 용
지원근거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
사업기간	○ 2011년 ~ 계속
시행주체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자격	① 농식품 분야 식품제조업체, ② 전통주류 제조면허 소지업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자금용도	○ 국산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 구입
융자금리	○ (고점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 ○ (변동금리) 농협은행고시 농업정책자금 대출 변동금리(주기 6개월) *국산 농산물 구매액에 따라 금리 차등 지원: 상위 15%(-1%), 16~30%(-0.5%)
융자기간	○ 1년 (전통주류는 술 발효기간이라는 특성 고려 2년)
사업의무	○ 융자금액의 125% 이상 국산 원료 농산물 구매
배정한도	○ 업체당 50억원 이내 (재정지원 80%, 자부담 2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20.)

19)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을 세척·박피(薄皮)·절단 등 단순가공하거나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및 민속예술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 수출의 촉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 전통주류는 제조과정에 발효기간이 필요하여, 원료매입 이후 매출 발생까지 추가 시간 필요(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식료품제조업체 현황(수산업·사료업 제외) 】

구분	사업체 수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1~4인	5~9인	10~19인	2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식료품제조업	69,498	56,983	6,047	3,350	2,189	569	304	36	17	3
도축·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4,379	2,137	882	659	515	119	56	7	3	1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3,982	2,049	836	579	399	76	39	4	0	0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7,844	6,082	1,008	432	242	65	13	2	0	0
동물성 및 식물성유지제조업	3,579	3,392	97	43	37	8	2	0	0	0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제조업	384	207	45	27	49	28	22	6	0	0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제조업	6,070	5,107	581	242	97	26	17	0	0	0
기타 식품 제조업	43,260	38,009	2,598	1,368	850	247	155	17	14	2

* '기타식품제조업'은 농·축·수·임산물 등 다양한 원료를 혼합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하는 산업 활동

※ 자료: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통계청, 2022.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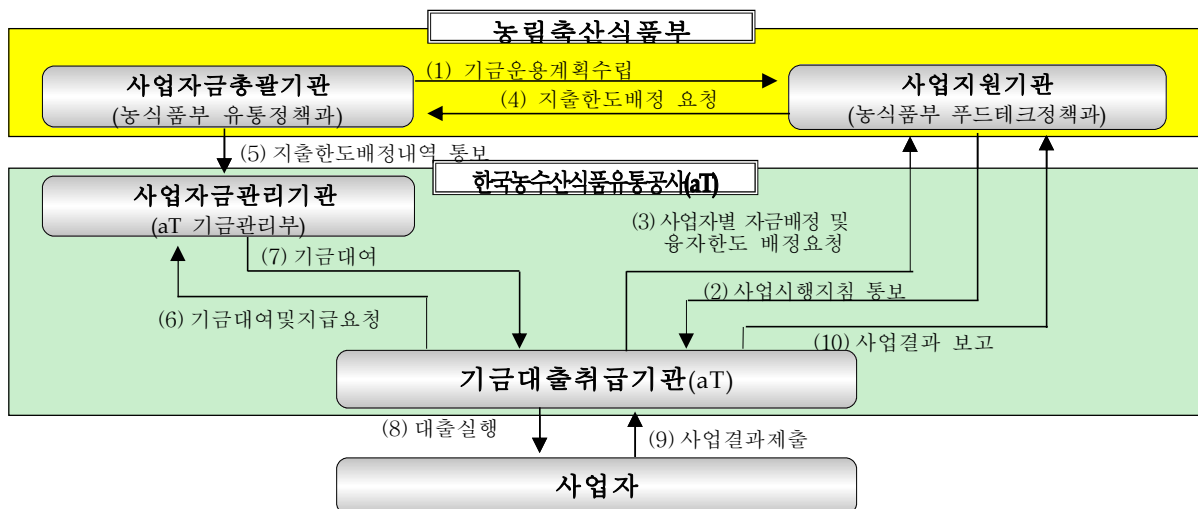
【 2023년 전통주 제조면허 현황 】

전통주 제조면허	2인 이하	3~4인	5~9인	10~19인	20인 이상
1,812	52.6%	25.2%	16.2%	5.6%	0.3%

※ 자료: 「2023년도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 2024. 12.)

- 동 내역사업은 ① 농림축산식품부가 기본계획(시행지침)을 수립하고, ② aT가 사업자별 자금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거쳐, ④ 각 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수행됨.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수행 절차 】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제출자료('25.6.20.)

- 동 내역사업의 2025년 계획액은 1,056억원으로, aT가 수립한 집행 계획에 따르면 2025년도의 자금 용자는 3월에 대상자가 모두 확정 (339개 업체)되어 전액(1,056억원) 배정되었고,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될 예정임.

【 2025년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월별 추진 현황 】

2024	2025			
12월	1월	2월	3월	4월 ~ 12월
사업 공고	신청접수	대상자 선정	대상자 자금배정·통보	대출 실행
완료	401개 업체 지원	339개 업체 선정	전액 배정 완료 (총 1,056억원)	5월 말 기준 298억원 대출 실행 *향후 기 대출 대환 등에 따라 실행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제출자료('25.6.20.)

- 2025년 2월에 사업대상자 선정시, 자금용자를 희망하는 업체는 401개였지만, 선정기준에 따라 339개 업체만 자금이 배정되었음.

이러한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은 ① 예산의 15%는 신규 지원업체 배정을 보장하고, 잔여 예산을 기존 지원업체에 배정하며, ② 신규·기존업체를 각각 분리하여 지원업체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음.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대상자 선정기준 】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국산 농산물 구매액	35점	○50억원이상(35점), 35억원이상~50억원미만(28점) 등
국산 농산물 구매 증가율	35점	○10%이상 증가(35점), 5%이상 ~ 10%미만(28점) 등
계약재배 구매율	20점	○계약재배 구매비율 50%이상(20점) 등
일자리 창출	10점	○고용인원 증가 10점, 유지 5점, 감소 0점
가점 및 감점	최대 ±5점	○장기간 계약재배 유지 3점, 배정액 포기 △2점 등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제출자료('25.6.20.)

□ 한편,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지원하지 않고, 99%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내에서 중기업과 소기업, 1인 기업을 구분한 자료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기업 규모별 선정현황 】

연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합계
2022	341 (99.7%)	1 (0.3%)	0	342 (100%)
2023	363 (99.5%)	2 (0.5%)	0	365 (100%)
2024	317 (99.4%)	2 (0.6%)	0	319 (100%)

* 중소기업 기준: 3년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자산총액 5천억 미만 등(「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중견기업 기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대기업 또는 특수관계자의 지배를 받지않을 것 등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최근 명목 GDP 확정치의 0.5% 이상인 기업집단(2025년 46개)과 이에 속하는 계열회사(2025년 2,093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지정하고 있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제출자료('25.6.23.)

□ 변경안은 2025년에 자금지원을 희망하였지만 예산 한도 상 지원받지 못한 업체가 62개에 달하고 있고, 식품업체의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적으로 50개 업체에 각각 4억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200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세부 산출내역 】

구분	산출내역
'25년 계획액	• 264개 업체 × 4억원 (5억원 × 80%*) = 1,055억 6,800만원 *용자 80%, 자부담 20%
'25년 변경안	• 314개 업체 × 4억원 (5억원 × 80%) = 1,255억 6,800만원 (50개 증가)

※ 자료: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사업설명자료(II-1)

- ☐ 농림축산식품부는 변경안의 증액분인 200억원을 아래 표와 같이 8월까지 대상자를 전부 선정하여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계획임.

【 2025년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추가자금 집행 계획 】

2025년		
7월	8월	9월 ~ 12월
사업 공고	대상자 선정	대출 실행

※ 자료: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제출자료('25.6.20.)

- ☐ 최근 원재료가격 등의 상승으로 경영비 부담이 급증하여 식품기업의 경영을 안정화하고, 국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민생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동 변경안의 증액은 긍정적으로 보임.

- ☐ 다만, 변경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첫째, 기존 수혜업체에 정책지원이 과다하게 집중되고 있으므로, 사업 홍보를 강화하여 신규 지원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을 지원받는 업체들 중 신규 및 기존 지원 업체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기존 수혜업체가 지원 받은 비율이 81.4% 였고, 2024년에는 93.4%로 나타남.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신규·기존 지원업체 현황 】

사업 연도	배정업체 합계	신규 업체		기존 지원업체	
		배정업체 수	비율	배정업체 수	비율
2021	312	58	18.6%	254	81.4%
2022	342	65	19.0%	277	81.0%
2023	365	72	19.7%	293	80.3%
2024	319	21	6.6%	298	93.4%

※ 자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출자료('25.6.24.)

특히, 농산물 식품제조업체 등은 2023년 기준 71,310개²¹⁾로 추산되나 동 사업은 매년 신청자 수가 400개 업체 내외로 변화가 거의 없고, 경쟁률이 1.2 대 1로 저조한 편인바,

이는 사업의 인지도가 높지 않아 용자사업의 존재를 아는 소수의 사업체가 수혜를 지속적으로 받고, 그 밖에 대다수는 사업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경쟁현황 】

연도	신청 업체 수	배정업체 수	경쟁률
2021	400	312	1.28
2022	401	342	1.23
2023	432	365	1.18
2024	393	319	1.23
2025	401	339	1.18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20.)

21) 식품제조업체(수산업·사료업 제외) : 69,498개(2022년 기준, 통계청),
전통주 제조면허 1,812개(2023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이처럼 융자지원의 기회가 기존 수혜업체에 집중되는 상황은, 신규 업체 지원을 통한 국산 농산물 구매 수요처 확대가 어려워지고, 정책 지원이 일부 업체에만 편중되어 자금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음.

따라서,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신규 정책자금 수요 업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둘째, 변경안의 산출근거(업체당 융자금액)가 미흡하고, 최근 실제 융자액과 차이가 있으므로, 합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함.

동 변경안은 1개 업체당 융자금액 4억원을 기준으로 편성됨.

2011년 최초로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편성단가가 4억 6,000만원, 2014년 3억 7,900만원 등으로 달랐으나, 2018년 이후부터는 편성단가를 일관되게 4억원으로 편성하여 왔음. 이에 따라 계획 대비 실제 융자금 및 수혜업체 수의 차이가 큰 상황임.

최근 3년간 평균 융자금액을 살펴보면, 1개 업체당 2억 9,3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바, 변경안(4억원)은 1억 700만원을 높게 산정하여 편성하고 있음.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1개 업체당 평균용자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배정 현황			비고 (편성 기준)
	배정금액(B)	업체 수(A)	1개 업체당 평균 용자액(B/A)	
2023	96,833	365	265	400
2024	96,833	319	304	400
2025	105,568	339	311	400
3년 평균	99,745	341	293	40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20.)

특히, 2023년은 242개 업체에 각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은 365개 업체에 평균 2억 6,500만원이 용자되어 지원 업체 수 차이가 50.8%에 달하고, 2024년 31.8%, 2025년 28.4%에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계획과 실제 지원대상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기금계획			실제 집행			계획과 집행 차이	
	용자금액 단가	지원업체 수(A)	총 배정금액	용자금액 (평균)	배정업체 수(B)	총 배정금액	업체 수 차이(A-B)	비율 (A-B)/A
2023	400	242	96,833	265	365	96,833	123	50.8%
2024	400	242	96,833	304	319	96,833	77	31.8%
2025	400	264	105,568	311	339	105,568	75	28.4%
평균	400	249	99,745	293	341	99,745	92	36.9%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20.)

편성단가와 실제 배정금액 간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업체당 배정금액을 줄여서 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경안의 업체당 4억원이라는 편성단가는 실제 운영현황(과거 평균 용자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설정된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지원금액 산출근거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①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검토가 어려워져 예산심사의 실질성을 저해할 수 있고, ② 추경에 따른 하반기 추가 지원대상자와 상반기에 배정이 확정된 사업자의 지원금액 차이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임.

따라서, 변경안의 용자금액 산출근거는 합리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셋째, 국산 농산물 구매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임.

동 사업은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국산 농산물 구매자금을 저리로 용자해주는 사업으로, 대출받은 업체는 용자금액의 125% 이상의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의무가 있음.

현재 aT는 대출 다음연도 초에 의무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고,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 위약금(3% 가산금리) 징수 및 2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평균 20개의 업체(6.7%)가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를 위반하여, 의무 이행 현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임.

【 식품가공원료매입 사업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 위반 현황 】

연도	업체 수	구매의무 위반 업체	미달률
2019	211	16	7.6%
2020	267	17	6.4%
2021	312	21	6.7%
2022	342	27	7.9%
2023	365	17	4.7%
평균	299	20	6.7%

* 2024년 사업의 구매의무 준수여부는 대출기간이 완료된 이후인 2025년 말 정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25.6.20.)

이는 현재 aT의 의무이행 점검이 구매 이후 사후적인 확인만 이루어지고 있고,²²⁾ 사전에 구매일정 등을 수립²³⁾하여 이에 따르는 상황을 모니터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임.

22) 「2025년 식품가공원료매입자금 세부시행계획」(aT, 2025.1.)

23) 현재 구매금액 총액에 대해서만 제출하고 있고, 구매시기에 대한 일정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있지 않음.

국산 농산물 구매의무가 준수되지 않는다면, 국산 농산물 판로 확대라는 동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은 엄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업체별 의무이행을 위한 일정(월별 또는 분기별)을 수립·제출하도록 하여 사전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하는 등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6) 축사시설현대화(용자) :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시 사업수요의 적기 반영, 철저한 사업관리 및 기금운용상황에 대한 점검 필요

- 정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시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재해 피해 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화 및 산란계 농가의 법령 준수 지원이라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 농림축산식품부는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의 집행이 재원 부족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기금 운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됨.

(가) 사업 개요

□ 축사시설현대화(용자) 사업²⁴⁾의 내역사업인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축사시설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을 용자하는 사업임.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축사시설개선 중 시설현대화(일반) 및 시설현대화(산란계)의 용자 규모 확대를 위하여 224억원을 증액하였음.

24) 회계(기금)-세부사업: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축사시설현대화(용자)(3760-332)

【 2025년도 축사시설현대화(융자) 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계획액	2025년			
		계획현액(A)	변경안(B)	증감(B-A)	%
축사시설현대화(융자)	99,995	95,959	118,359	22,400	23.3
- 축사시설개선	64,400	73,219 ²⁵⁾	95,619	22,400	30.6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35,595	22,740	22,740	-	-

(나) 검토의견

□ “축사시설개선” 사업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²⁶⁾에 따라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 중인 축산 농가 및 농업법인에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25) 당초 계획액은 679억 4,600만원이었으나 자체변경('25.5.28.)을 통해 내역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280억 1,300만원)”에서 52억 7,300만원을 감액하고 “축사시설개선”에서 동 금액을 증액함.

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1. 농지의 구입·임차 등 농업경영·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기획·유통·광고·회계·기술개발·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원 조건은 융자 80%, 자부담 20%이며, 융자 조건은 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임.

【 축사시설개선 사업 개요 】

- **(목적)**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의 소득 증대 및
국제 경쟁력 제고
- **(지원근거)**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업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 **(지원대상)**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허가되어 가축을 사육 중
인 축산 농가 및 농업법인
- **(지원조건)** 융자 80%, 자부담 20%,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내용)** 축사 신축 및 개보수,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구분	세부 내역
축사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축사시설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 * 예) 급이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소방 시설 등
축산시설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예) 약취 포집 및 저감시설, 인큐베이터, 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등
방역시설	울타리, 농장출입문, 차량 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경관개선시설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 시설 * 예)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

- 동 내역사업의 2025년 계획액은 당초 ① 일반축종 축사시설 200개소에 대한 용자액 319억 4,600만원(개소별 약 2억원, 용자 80%)과 ② 산란계 사육시설 30개소에 대한 용자액 360억원(개소별 약 15억원, 용자 80%)으로 총 679억 4,600만원이었음.

그런데 지난해 11월 경기일대 대설과 2025년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인해 축사 붕괴 또는 전소 등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농가의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5년 5월 28일 자체변경을 통해 내역사업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에서 52억 7,3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사시설개선”을 52억 7,300만원 증액하여 동 내역사업의 계획현액은 732억 1,900만원임.

- 이번 추경에서는 이와 더불어 ① 산불 등 피해 농가의 축사 신·재축 50개소(당초 200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80억원, ② 산란계 사육시설 면적 기준이 「축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강화(0.05m²/마리당 → 0.075)됨에 따라 사육시설(케이지) 개선 12개소(당초 30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144억원을 증액하여 총 224억원을 증액하려는 것임.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세부 산출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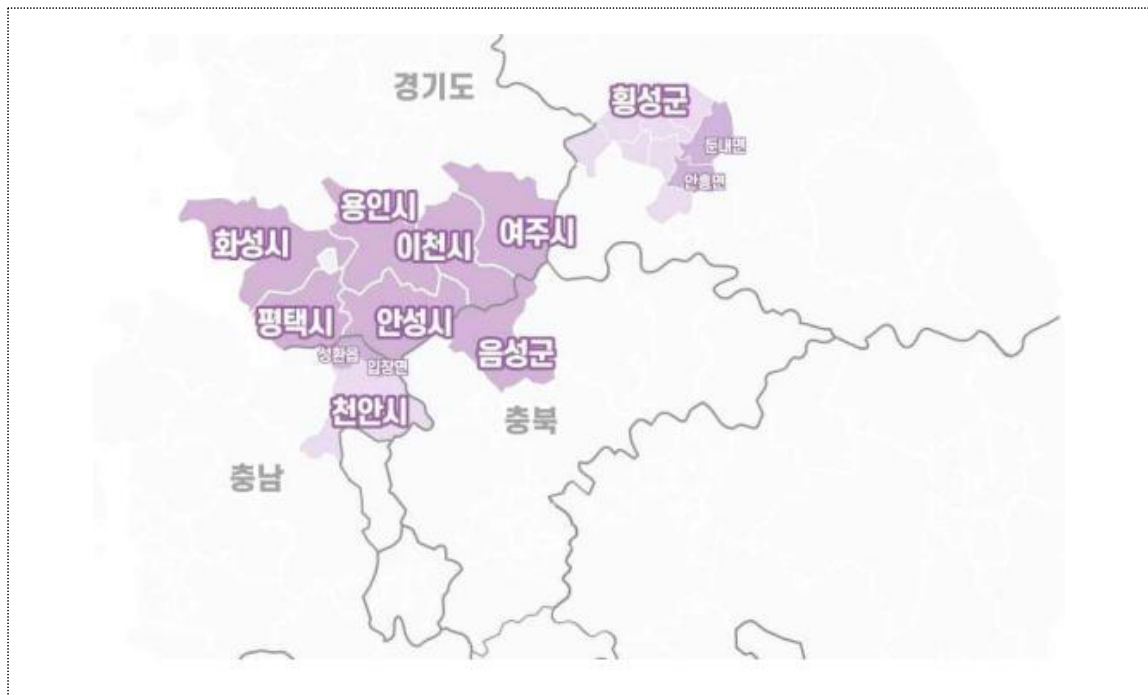
'25년 계획액	'25년 변경안
가. 축사시설개선(일반축종) : 31,946백만원 · 31,946백만원 (일반 축종) 200개소×2억원×용자(80%)	가. 축사시설개선(일반축종) : 39,946백만원 · 31,946백만원 (일반 축종) 250개소×2억원×용자(80%)
나. 축사시설개선(산란계 케이지) : 36,000백만원 · (산란계) 30개소×15억원×용자(80%)	나. 축사시설개선(산란계 케이지) : 50,400백만원 · (산란계) 42개소×15억원×용자(80%)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먼저, 특별재해로 인한 “축사시설개선(일반축종)” 사업의 확대 필요성을 살펴보면, 작년 11월 경기남부에 집중된 대설로 축사 등 관련 시설 128.6ha가 붕괴되었으며, 올해 3월 영남지역 발생한 산불로 축사 등 9.15ha가 소실되었음.²⁷⁾

지난해 11월 26~28일 하루 최대 40cm 이상 많은 눈이 내리면서 경기 일대 7개 시·군과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으며, 특히 시설하우스,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에 피해가 집중되었음.

【 '24.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



※ 자료: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11.26.~28. 대설·강풍·풍랑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4.12.18.

27)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집계 자료

한편, 지난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울산 울주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8개 시·군에서 인명피해 183명(사망 27명, 부상 156명), 재산피해 총 1조 818억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중 임·축산시설의 피해는 641건, 205억 2,500만원, 가축의 피해는 46억 7,300만원에 달함.

【 '25.3. 특별재난지역 선포 8개 시·군 피해 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피해물량	피해액
총 계		-	1,081,786
사유시설 계		-	517,473
주택	전파(동)	3,592	338,663
	반파(동)	256	11,589
	세입자(세대)	358	-
	주거불가능(세대)	572	-
농·어업시설(건)		6,106	60,848
임·축산시설(건)		641	20,525
농기계(대)		17,158	34,900
농작물 / 산림작물(ha)		3,419	45,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 / 24,509 / 8,265	4,673
수산물(마리)		274,365	1,088
어망어구 / 어선(건)		30	173

※ 자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축산시설 631건에 대해 100억원 가량(국비 70억 3,600만원, 지방비 30억 1,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나, 이는 개소당 1,600만원 가량 수준임.

【 '25.3. 산불 피해 시설별 복구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계	국 비	지방비
농업	농업시설(건)	6,101	29,464	20,626	8,838
	농작물(ha)	1,952	22,360	15,652	6,708
	축산시설(건)	631	10,050	7,036	3,014
	가축(마리) / 꿀벌(군) / 곤충(kg)	22,061/24,509/8,265	4,671	3,276	1,395
	농기계(대)	17,158	13,564	9,496	4,068

※ 자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농업부문 재해복구의 지원율은 보조 35%, 융자 55%, 자부담 10%로 구성되어 자부담 및 융자 비율은 낮으나, 아래 표와 같이 지원 단가가 낮아 축사 신·재축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 재해복구비 및 축사시설개선 지원단가 비교 】

구분	재난복구비 지원단가		축사시설현대화 지원단가	
우사	한·육우사	168천원/m ²	한·육우	380천원/m ²
	유우사	190천원/m ²	낙농	380천원/m ²
돈사	번식돈사	484천원/m ²	양돈	967천원/m ²
	비육돈사	361천원/m ²		
계사	산란계사	34천원/m ²	산란계	1,182천원/m ²
	육계사	249천원/m ²	육계	662천원/m ²
	육용종계사	293천원/m ²	종계	680천원/m ²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5. 6. 22.)

이에 피해 농가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별도의 추경을 통한 지원이 필요해 보임.

□ 다음으로, 산란계 사육시설 개선의 지원 필요성을 살펴보면, '25.9.1.부터 개선된 산란계 사육면적이 적용됨에 따라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는 약 19.3% 감소하고, 계란 산지 가격은 약 33.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²⁸⁾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충제 계란 사태('17.8월)²⁹⁾ 이후 계란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산란계 사육환경 개선, 난각표시 의무화 등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17.12월)”을 수립하였고,

동 대책에 따라 산란계의 최소 활동 공간 확보 및 닭진드기 감염 등 가축 질병 확산 감소를 위하여 산란계 사육밀도를 확대($0.05\text{m}^2/\text{마리당} \rightarrow 0.075\text{m}^2/\text{마리당}$)하도록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18.9월 시행)함.

다만, 기존 농가는 개정규정의 적용을 7년간 유예하여 '25년 9월부터 사육밀도를 준수하도록 하였음.³⁰⁾

28)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산란계 사육면적 개정에 따른 국내 농가 대응 실태·파급효과 및 국외사례 조사, 2023.11.30.

29) '17.8월 국내산 친환경 농가 계란에서 진드기 등을 없애는 데 이용되나 닭에는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 살충제 성분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비펜트린'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계란 출하가 중단됨. 1,239곳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52개(4%) 농장에서 미허용 또는 기준치 이상의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었음.

30) 「축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041호, 2018.7.10. 일부개정)」

부칙 제4조(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케이지 시설 및 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종계업 또는 산란계 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025년 8월 31일까지 별표 1 제1호나목4)가) 종계·산란계란의 개정규정(이하 이 조에서 “케이지 면적 개정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4.3월 기준, 산란계 농가 941호 중 기존 케이지(직립형·A형)를 사용하는 농가는 464호(약 49.3%)로 추정되는데, 농림축산식품부는 ‘24년까지 동 사업을 통해 120개소 사육시설 개선을 지원하였고, ‘25년 본 예산에서는 360억원(30개소)이 편성되었는바, 교체대상 산란계 농가의 32.3%에 불과함.

이는 케이지 일시 교체에 따른 농가당 소요비용이 15억원 내외로 추정됨에 따라 중소규모 농가의 투자 여력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또한, 일부 산란계 농가는 케이지 교체 없이, 입식하는 산란계 마리수를 감축하여 개정된 시설면적 기준을 충족하려는 경우³¹⁾도 있는바, 일시적인 계란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이에 중소규모 농가의 추가적 사육시설 개선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산란계 농가 경쟁력 제고와 계란 수급·가격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산란계 사육 현황(‘24.3월 기준) 】

구 분	방사 (1번)	평사 (2번)	개선된 케이지(3번)	기존 케이지(4번)	
				직립형	A형
사육시설 형태					
농가수	107	287	83	363	101
농가비중	11.4	30.5	8.8	38.6	10.7
사육마리 비중	1.0	9.2	15.6	69.6	4.6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5. 6. 20.)

31) 0.5m² 케이지에 산란계 10마리 입식 → 기존 케이지를 그대로 두고 6마리만 입식

□ 다만, 동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당초 계획 수립 시점 또는 연중 예상할 수 있었던 현장의 사업 수요를 적기에 추진하지 않고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포함하였음.

「국가재정법」 제70조³²⁾에 따르면 기금관리주체는 ①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②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③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주요항목의 20% 범위 내³³⁾에서는 국회의 의결 없이 사업 규모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함.

32)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같은 항에 규정된 협의를 함에 있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3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주요항목(축산업 진흥 및 동물복지향상 프로그램)의 2025년 지출계획은 1,335억 1,700만원으로 267억 340만원까지 자율적 변경이 가능함. 다만, 이번 추경에서는 공공자금관리 기금 예수금(세입)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게 되었음.

그런데, 대설이나 산불 피해로 인한 축사시설 개선의 경우 2025년 4월 산불 대응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그 수요를 조사하고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추가 재원 확보 등을 통해 사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었던 상황임.

또한, 산란계 사육시설 면적 준수 의무는 「축산법 시행령」에 따라 '25.9월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던 바 당초 계획 수립 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하여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소요로 보기 어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6월 현재까지 축사시설 개선 확대를 위한 증액 규모가 52억 7,3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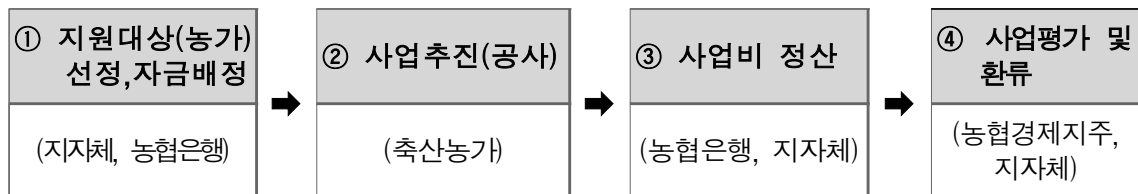
따라서 정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 시 현장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축산농가의 조속한 경영안정화와 '25.9월 이후 산란계의 법령 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신속한 집행 및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동 내역사업은 ① 회계연도 전 지자체에서 사업공고 및 농가의 신청을 받아 ② 농식품부에서 해당 연도 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자체

에 예산을 배정하면 ③ 지자체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며, ④ 축산농가에서는 지체 없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축사 신·개축 등 사업을 착공하고, ⑤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농협에서 대출금을 실행하는 절차로 운영됨.

【 축사시설개선 사업 집행절차 및 집행계획 】



'25년 6월 중순	추경 사업자(축산농가)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25년 6월 하순	지자체를 통하여 추경사업자 선발
'25년 7-12월	참여농가 축사시설현대화 공사 추진
'25년 12월	사업완료에 따른 대출금 실행 등 사업비 정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자료(2025. 6. 20.)

그런데 2025년 당초 계획의 사업추진 일정을 보면, 축사시설개선 사업 공모에서부터 농가의 사업신청('24.12.) 및 사업자 선정('25.2.) 까지 약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 2025년 축사시설개선 사업자 선정 일정 】

일 시	주 체	내 용
'24.12.	농식품부	축사시설개선사업 공모
	시·도 및 시·군·구	세부계획 홍보 및 사업 안내 공고('24.12)
	축산농가	사업신청
'25.1.	시·군·구	사업 수요 취합 및 시·도에 사업 신청
'25.2.	시·도	사업자 선정·확정 농식품부 보고
'25.2~	시·도 및 시·군·구	사업 관리 전산 시스템 사업자 입력 등 사업관리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5. 6. 22.)

또한, 축사 신·재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해 본예산에 편성된 축사개선시설의 대출실행액도 실질적으로는 하반기에 집중되는 실정임.

【 '23 ~ '25년 축사시설개선 사업 월별 대출실행액 】

(단위 : 백만원)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2023	-	320	879	84	5081	572	-	2,030	1,785	708	2,877	4,280	18,614
2024	-	-	-	30	692	1,679	3,074	5,427	2,806	4,154	2,219	8,022	28,102
2025	-	-	1,298	680	340	-	-	-	-	-	-	-	2,319

* 주: 해당 월의 대출실행액으로 회계연도상 실적행액과 차이가 있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5. 6. 23.)

이에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 착수를 목표로 한 축사시설개선 사업의 집행계획은 지연이 예상되며, 재해 피해지역에 공사 물량이 집중됨에 따라 사업완공까지는 추가적인 지연 가능성도 존재함.

한편, 산란계 농가의 경우 '25.9월부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축산법」 제26조제1항 및 제56조제1항제6호³⁴⁾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육기준 변경이 현장에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란계 사육시설 기준 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2년간('25.9.~'27.9.) 유예하겠다는 입장임.

따라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해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 및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신속한 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재원 부족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유무역협정이행기금은 주로 과거 집행된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 재원을 기반으로 운영됨.³⁵⁾

34) 「축산법」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3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런데 2024년에는 FTA피해보전직불금³⁶⁾ 지급액이 당초 계획액 대비 571억원 증가하고, 2024년 실제 융자회수금이 당초 정기상환 예정액 및 조기상환 추정액에 근거한 회수계획액³⁷⁾보다 1,254억원 가량 미달함에 따라, 기금의 여유자금의 당초 계획액인 2,515억원에서 78억원에 불과하게 되었음.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준금리 인상('20년 0.5% → '24년 3.0%)으로 시중 대출금리가 정책자금의 대출금리(1~2%)를 초과함에 따라 조기상환액이 감소하였고, 융자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채권규모가 감소되어 계획액 대비 수입실적이 저조했다는 설명임.

【 2024년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결산총괄표 주요사항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 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수입	총 계	588,566	588,566	365,542	35.1	482,612
	기타민간이자수입	25,705	25,705	7,642	29.7	7,555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	264,978	264,978	139,559	52.7	194,424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157,659	157,659	99,412	63.1	141,000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36) FTA피해보전직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가격 요건, 총수입량 요건, 협정체결국 수입량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이 가능함. 2024년에는 한우, 육우, 한우 송아지, 낙두 4개 품목이 선정됨.

37) 정기상환: 융자사업별 상환 스케줄상 2024년 회수금액(42,408백만원)

조기상환: 전년말 잔액(864,930백만원) × 최근 5개년 평균 조기회수율* = 222,570백만원

* 조기회수율: 당초 계약보다 빨리 상환한 액수/전년도 융자잔액

구 분		2024년				2025 계획
		계획		결산(B)	집행률 (B/A)	
		당초	수정(A)			
지출	총 계	588,566	588,566	365,542	62.1	482,612
	피해보전직불	5,400	62,675	62,571	99.8	21,866
	축사시설현대화(융자)	99,995	80,964	65,864	81.3	95,959
	여유자금운용	251,503	214,909	7,809	3.6	193,658

* 주: 수입, 지출 항목 중 변동금액이 큰 일부 항목만 발채함.

※ 자료 : 2024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3.) 재구성

이에 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축사시설 개선 사업은 기금 부족 문제로 지자체(사업시행주체)로 융자액을 교부하지 못하고 150억원을 2025년으로 이월하여 집행 중임.

【 최근 3년간 축사시설개선 집행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계획액	계획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2022년	71,812	92,470	91,966	-	504
2023년	48,400	48,400	48,377	-	23
2024년	61,200	54,527	39,427	15,000	100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5.6.24.)

특히, ‘24.7.4. 자체변경을 통해 불용이 예상되는 내역사업 “젓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에서 32억원을 감액하고, “축사시설개선”을 위해 32억원을 증액한바 있는데, 결과적으로 한도 부족으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 상황에 대한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임.

【 2024년 축사시설현대화(용자) 계획변경 세부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목	내역사업	금액	계획수정사유
자체변경 (‘24.7.4.)	450-04	축사시설개선	3,200	시설현대화 예산 수요 지자체 지원
		젓소 육성우 전문목장 지원	△3,200	공모 신청 지자체가 없어 전액 불용 예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4회계연도 결산 사업설명자료(2025.5.)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26억 7,200만원(사업금액 224억원 + 공공자금관리기
금 예수이자상환 2억 7,200만원)을 예수할 계획인바 2024년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향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
해 증액된 사업의 집행이 재원 부족으로 이월되지 않도록 기금 운
용 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요구됨.

참 고

산란계 사육시설 현황

시설 구분	설 명	관련 사진
배터리 케이지 (Battery cage)	- 직립식 또는 A형 케이지 - 단위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음 - 동물복지 수준이 가장 낮음 - <u>EU에서는 '12년부터 사용 금지</u>	직립식 
		A형 
확장형 케이지 (Enriched cage)	- 기존의 케이지에 산란계의 동물복지에 필요한 난상, 깔짚, 햇대, 발톱마모장치 등이 갖추어진 형태 - 동물복지에 대한 논란 존재 - <u>EU에서는 '24년부터 사용 금지</u>	
개방형 (다단식) 케이지 (Aviary cage)	- 개방형으로 닭들이 간혀있지 않은 사육시설 - 닭에 필요한 난상, 햇대 등이 포함 - 집란, 급이, 계분수집이 자동화 - <u>EU 및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포함</u>	
평사 (Barns)	- 깔짚형 실내평사사육(육계사 형태) - 계사내부에 난상, 햇대등이 포함 - 국내 동물복지 인증 대다수농가 형태 - <u>EU 및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포함</u>	
방사 (Free range)	- 계사 외부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설 - 가장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형태 - 대부분의 유기산란계 형태 - 조류독감과 같은 질병발생 가능성 - <u>EU 및 국내 동물복지 인증기준에 포함</u>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5. 6. 20.)